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360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 : 심상정 · 강민정 · 강은미

권인숙 • 류호정 • 배진교

양정숙・오영환・아수진॥

이용빈 • 이은주 • 장혜영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공직자의 지위·권한을 남용한 사 익추구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공공기관의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 음.

이러한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는 「공직자 윤리법」이 있으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법 률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 임.

이에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착·기피·회피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 공직윤리제도를 이 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각 제도간 체계적·유기적 운영을 통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공 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안 제2조).
- 나.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 나 기피·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정무직공무원 및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

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안 제6조).

- 라.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 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 등이 속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 바.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선박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등 자신의 직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
- 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등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공직자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속 기관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
- 아.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정부 등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관할 등록의무자 중 정무직공무원 등의 재산등록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8조).

- 자. 등록의무자 중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본인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등을 하도록 함(안 제34조).
- 차. 등록의무자인 취업심사대상자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되,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7조 및 제48조).
- 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5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340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67호) 및 「공직자윤 리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3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 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예방과 관리, 공직자 및 공 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한 직무집행을 보장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 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제15조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3.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 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4. "직무관련자"란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직자가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 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 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5.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사적 이해 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 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한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관리 및 예방

- 제5조(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除斥) 된다.
 - 1.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인 경우
 - 2.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가족(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인 경우
 -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

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다만, 공직자의 가족이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직자의 가족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또는 그의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인 경우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공직자는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다음 각 호의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처리 결과를 기피 또

는 회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 2. 직무대리자의 지정
- 3. 전보
-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공직자의 제 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 다.
- ⑥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피·회피의 신청 방법,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현황의 기록·관리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는 그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공공기관의 장이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무직공무원 및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3. 공직유관단체 및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4.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특정직공무 원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기관 · 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 2. 제공하였던 고문·자문·상담 등의 내용
- 3. 관리 · 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명세서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④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대리·고문·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2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직무
- 2.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
- 3.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
- 4. 조세의 조사 · 부과 ·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
-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
-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직무
- 7. 사건의 수사 및 재판·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직무
-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명세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기피, 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는 "고위공직자"로 본다.
- 제7조(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①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 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상대방인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거 나 조언·자문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 외에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외부활동을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직자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 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족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이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 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3.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분양·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는 제외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해당 공직자에게 제5조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이하 "소속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산하기관(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항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자(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신의 가족이 그 공 공기관에 채용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이하 "산하기관 담당자"라 한다)는 자신의 가족이 그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 조달을 위한 계약(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그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는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 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산하기관 담당자는 소속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 계약업무 담당자 또는 그 가족, 산하기관 담당자 또는 그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공직자는 예산(기금・부담금・수익금

등을 포함한다)을 집행·사용·관리할 때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해 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공공기관의 물품과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① 공직자는 공 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 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는 공공기관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단체 또는 다른 공직자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 그 기관이나 개인
-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ㆍ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ㆍ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4조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3장 재산등록 및 공개

- 제14조(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1.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 원
-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 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 5. 법관 및 검사
-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 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 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

- 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의 직원
- 제15조(공직유관단체의 지정) 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 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1. 한국은행
 - 2. 공기업
 -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 관·단체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1. 본인
 -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및 전세권
 - 2.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 權)
 -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 제품을 포함한다)
-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카.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 4.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5. 주식매수선택권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 3.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 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수량·내용 등 명세
- 5. 혂금·예금·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 6.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 (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대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
-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 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함량과 중량

-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 기·색상 등 명세
-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크기를 고려한 전문 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행사기 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 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1.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 경우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한다.
- 2.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제17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강임(降任)·강등(降等) 또는 퇴직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5. 정부의 부·처·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처·청
 -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 10.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 11.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 청.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 ·구에 등록한다.
- 12.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처·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국민권익위원회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다를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 관으로 할 수 있다.

- 제18조(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③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 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 ④ 제2항은 제1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등록의무자 중 소

- 속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 증 등(사본을 포함한다) 재산의 증감원인(增減原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19조(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18조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 사항 신고 시에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식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5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 제20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1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1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 정된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받은 등록의무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21조(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16조제3항제12호 중 골프회원권의 매매·증여 또는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다만, 매매 등의 거래를 한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증여와 같이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해당 연도에 거래를 하지

-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변동액을 신고하되, 공시가격 변동액이이미 신고된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 2.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품목·수량·금액 등 증감한 변동사항. 다만, 제16조제2항제3호사목 및 아목의 재산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등록대상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 3. 제1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법인 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의 변동사항
- 제22조(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0조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 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

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 ⑤ 제26조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18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4조·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72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

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 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 존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 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유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18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 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 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 ④ 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①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 26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무를 위탁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담한다.

제25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등록 사항의 심사(제27조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등록대상재산

- 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경고 및 시정조치
- 2. 제8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 ②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16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 제26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2. 제24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 3. 제4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49조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 직자에 관한 사항
 -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

- 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 ·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 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 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 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 직자(등록의무자인 공직자를 말한다)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 항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
-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 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7조(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 견된 경우
- 3. 심사과정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28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18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 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 원
 -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

사

-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 9.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10.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11.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 12.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 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 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18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 ②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 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 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복 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非違)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 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 제29조(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 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16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

만, 그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 상재산에 관하여 해당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전까지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30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 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았 을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 록의무자가 된 날) 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 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 해 전보 등의 사유가 생 긴 달에 그 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

산변동사항 신고 의무기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을 준용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8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 제31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등록 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 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 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

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제24조제5항에 따라 금융 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4장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34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31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또는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35조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

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42조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7항 또는 제42조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주식의 매각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 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 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라.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 제35조(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법관, 교육자,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나 그 밖에 백지신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 런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 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 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

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연장할 수 있다.
-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 의를 할 수 있다.
- 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3 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 제37조(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34조제1항 또는 제36 조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② 제34조제1항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 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 2. 신탁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40조(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 1.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아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 한 경우
 - 3.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 4. 주식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 서 제35조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 위와 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 ③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 제41조(공개대상자등의 기업 경영 등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 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 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 2.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 ② 공개대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자등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42조(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35조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35조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 견된 경우
- 3. 심사과정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43조(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공개대상자등은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공개대상자등이 제35조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4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34조제1항 또는 제3

- 6조제2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선물신고

- 제4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70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선물의 국고 귀속 등)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 제4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 된 법인·단체
 -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법무법인등"이라 한다)

-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 1항에 따른 회계법인
-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 항에 따른 세무법인
-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9.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 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7호의 경우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재판·심리·심판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71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 3. 2급 이상의 공무원
-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 관단체의 직원
-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

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제1항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9조(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 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퇴직후에 취급할 수 없다.
 -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49조제2항 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 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 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신고로

인하여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되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6조제4항 각 호에 따 른 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53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47조제 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 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

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당,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수 있다.

-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 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 1. 제4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 2. 제49조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①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

- 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 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 및 공시의 내용·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 제57조(기획·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직자의 이 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제5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3. 국민권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5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리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60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58조제1항에 따른 신고
- 2. 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 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

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 제6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제5조 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63조(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 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5조에 따른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기피·회피의 처리에 관한 업무
 - 2.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서 보관·관리 및 제척 ·기피·회피의 처리에 관한 업무
 - 3. 제8조에 따른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 4. 제3장에 따른 재산등록에 관한 업무
- 제64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5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이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

- 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6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1.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제67조(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4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4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35조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9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장 징계 및 벌칙

- 제70조(징계 등)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제5조부 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소속기관장에게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8조제1항(등록의무자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제3항을 포함한다)·제8항, 제19조 및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4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 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4. 제24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8조제3항(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 6. 제31조제1항(제19조제4항 및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 우
- 7. 제31조제2항(제19조제4항 및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 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32조(제19조제4항 및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이용한 경우
- 9.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36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12.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 1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14.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5. 제4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 16.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 18. 제63조(제19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제71조(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 업심사대상자를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취업 제한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
- 제72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3조(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1항 또는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4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24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75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19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5조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5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24조제6항(제19조제 4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6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28조제3항(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7조(비밀누설의 죄) ① 제33조(제19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63조(제19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제78조(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이해관계자가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 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 제80조(비밀이용, 신고자등의 보호 위반의 죄) ① 공직자(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가 제64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 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2. 제6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 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2. 제6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 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 록 강요한 자
- 2.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⑤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 제81조(과태료)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제13조에 따라 준 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2. 제6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고위공직자
- 3.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한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 담당자
-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가족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그 공공기 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고위공직자
- 5.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가족이 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계약업무 담당자
-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산하기관 담당자
- 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 8. 제6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 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

공직자

-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공직자
- 3.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공직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 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공직 자
-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공직자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은 공직자
- 5.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5조제1항제2호(제19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태료 부 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6. 제24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 7. 제24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 8. 제54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 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공

직자

- 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아니한 사람
- 3.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 4.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제출한 사람
- 5.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 6. 제56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 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은 제2항,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5항제1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임용되거나 취임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한 신고·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공직자원리법」 제9조"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며, 제85조제2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로 하고, 제26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 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를 각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로 한다.

④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5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22조"를 "「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로 한다.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3호, 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제4조의3제3항제3호를 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⑥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다목 중"「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으로 한다.
- ⑦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 ⑧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를"「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_ 제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을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_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⑨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를 "「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1세14조"로 한다.

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⑪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8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 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 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직무관련성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⑩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로 한다.

③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공직자윤리법」"을 각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④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나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로 한다.

⑥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